

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하시고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7일
공연장	종류	[] 공공 [] 민간		
	명칭	등록번호		
	소재지	전화번호		
설치자	법인 또는 단체명	대표자명		
	주된 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	
운영자	법인 또는 단체명	대표자명		
	주된 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	
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요건 여부	좌석 수 1천석 이상 여부	[] 해당	[] 미해당	
	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 설치로 무대와 객석 구분 여부	[] 구분	[] 미구분	
	방화막 작동 공간 확보 가능 여부	[] 가능	[] 불가능	
	방화막 설치 시 「건축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 기준 충족 여부	[] 충족	[] 미충족	

「공연법」 제11조의7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귀하

첨부서류	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공연장의 종류는 설치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(예: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 시 ‘공공’으로 표시)
- 설치자, 운영자가 개인일 경우 ‘법인 또는 단체명’에 성명을, ‘주된 사무소 소재지’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입합니다.

처리 절차

